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1. 27 선고 2024가단5261784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주택도시보증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민 담당변호사 가영현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2024. 11. 13.

판결 선고2024. 11. 27.

주 문

1.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2. 원고에게,
가. 피고 B은 피고 A으로부터 위 1.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250,000,000원을 지급하고,
나. 피고 A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38,873,357원과 이에 대하여 2023. 12. 20.부터 2024. 9. 20.까지는 연 5%,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
각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1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2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김주옥

별지